

#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 일시 : 2018. 12. 26(수), 14:00~16:00

□ 장소 : 외교센터 회의실(더모스트)

---

□ 보고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 심의안건

1.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019회계년도 사업계획(안)

4.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 의결내용

○ (사회자) 성원보고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이사 30인중 20인이 출석하시어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사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하겠음.

○ (사회자) 참석이사 및 연구원 간부 소개

○ (이사장) 인사말씀

- 다 아시겠지만, 금월 5월에 전임 원장님께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어 제가 권한대행을 7개월째 맡고 있음. 오늘 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새 원장님 보고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조만간 원장이 결정되어 취임하실 것으로 알고 있음. 오늘 이사회에 제가 권한을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물론이고 지방에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17개 시도의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오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림. 오늘 보고안건 1건과 8개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2018년도 연구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o (이사장) 다음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보고안건이 1건, 심의안건이 8건인데 보고안건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o [이사장] 보고안건은 1건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행정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작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투자자문위원회에 보수적 운영을 권고 받음, 제한적으로 제2금융권에 5천만원 한도로 10억원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 주시길 바람

(박재영)예금자보호 대상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 하시는건 어떤지?

(이사장)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한도 조정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구)금융기관 선정은 매년인지, 그리고 예치기간은 얼마인지?

(행정국장)정기예금에 1년 단위로 진행 중.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함.

(대구)지역금융기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탑 클래스 지역은행 말고 부산, 제주 등등 관리를 잘하는 지방은행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지?

(이사장)내년도 과제 중 지역금융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과제에 맞추어 적금 검토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1보고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이사장] 심의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제1심의안건인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행정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행정국장)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안 설명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1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8% 인상을 함. 연봉기준표는 신규직원에게 적용하고 재직직원은 현 연봉에 1.8% 인상조치할 계획임.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이사장) 의견 없으면 제1심의안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음. 제1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사들) 없습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0 [이사장] 제2심의안건인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을 상정 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행정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행정국장) ‘직제 및 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안 설명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인사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음.

지금도 신규직원 채용중이며,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 임.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영)채용사실이 10년 뒤에 밝혀질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사장)판례나,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회사 증명서는 위조가능하여, 연금공단 및 건강보험 공단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인 중

(이사장)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 하고 있으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

(강원)공무원의 경우 20년 만에 밝혀져 나간경우가 있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화성 필요함.

(이사장)내용은 권익위의 내용을 담은 것이고, 여지를 둔 것으로 봄

(변창흠)1안에서 보수규정을 했는데 직제인사규정에 보수가 또 나오는 이유는?

승진가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8%인상이 인사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14조 2항 3항 삭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필요

(행정국장)14조 2항 3항은 결격사유에 내용이 포함. 승진가급과 연봉가급은 2년전 연봉개정시 승진할 경우 공무원 연봉제를 참조하여 승진가급을 만듦. 연봉가급은 호봉제일 때 호봉간의 간격을 의미하며,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호봉제일때의 호봉간격간 차이를 호봉가급이라 명칭함

(이사장)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김태영)14조5항에 허위서류와 허위기재가 같은 의미가 아닌지요

(이사장)권익위 권고사항을 확인 후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검토후 보고드리겠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사장) 의견 없으면 제1심의안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음. 제1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사들) 없습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o [이사장] 제3심의 안건과 제4심의안건인 “2019회계년도 사업계획(안)” 과 제4심의 안건인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이 안건에 대해 연구기획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음**

(연구기획실장) ‘2019회계년도 사업계획(안)과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이사장) 제3심의 안건인 ‘2019회계년도 사업계획(안)’ 과 제4심의 안건인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변창흠) 사업계획을 보니 현재인력으로 가능하신지요?

경상경비를 많이 줄였고 비용을 많이 삭감했는데

(이사장)쉽지 않지만 노력하겠음. 국책연구기관에 비교하면 연구원은 중간수준

원주로 이전 후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안정기에 들어 비용 절감이 발생

(변창흠)대외협력, 교육사업, 신규사업 등등 사회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

(손희준)일반회계 전기이월금과 특별회계 전기이월금 중 특별회계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이삼주)특별회계 이월금은 사업이월과 적립금 이월로 나누어짐. 사업이월은 3차에 들어오는 과제에 대한 이월금이며, 적립금이월은 수수료에서 절약된 돈을 적립하여 사업이 감소할 경우 인건비와 경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립 중

(박재영)컨설팅사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일반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맡기고 있는데

컨설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각각의 포럼에 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국정목표 실천 경진대회의 표현이 적절치 않음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음. 35년사 편찬을 왜하는지 40년사도 아니고, 지

역통계조사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고, 집합교육, 방문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데 구체적 내용이 없고, 민간투자사업 예산이 없는데 뭘 의미하는지 별도로 알려주시길 바랍. 컨설팅사업의 구체적 내용

(이사장)대부분 사업계획서에 담겨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사업은 지역의 교수, 지방연구원과 함께 35년간 축적된 역량을 함께 협력할 사항에 있으며, 작은연구 같은 경우는 2 3개월의 짧은기간에 실천가능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경진대회는 매년 하는 사업이어서 일부 후원하는 차원이며, 35년사는 서초시대를 마감하고 원주시대에 들어서 35년 역사에 버금가는 기록이 없어 수많은 기록물이나 자료를 정리하는차원에서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음 통계조사사업은 100개이상의 과제 수행을 하는데 수많은 데이터를 DB화 하여 연수원 스스로의 독자적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함.

교육사업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이사님 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재정정책관)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고시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19년1월1일자로 재고시 진행중이며, 향후 지정이 되면 3년간 고시기관의 전문기관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이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 할 계획이며, 회계의 독립성을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센터가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담당사무관으로써 일하고있는데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이 부족함. 연구원분들과 시도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수 있으면 좋겠음. 출연금을 증액해달라고 갑자기 요청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 서로 왕래하며 소통을 했으면 좋겠음

(전남)출연금 인상을 요청하셨는데 예산편성 작업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많은 지자체가 확보를 못한걸로 아는데 앞으로 예산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실건지

(이사장)지자체와 소통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소통창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 의견 없으면 제3심의안건과 제4심의안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음.  
제3심의안건과 제4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사들) 없습니다.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이사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은 실무자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00분 산회)

**2018. 12.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겸 이사장 윤 태 범**

- 출석이사 20인(이사장 포함) : 서명자료 별첨참조  
윤태범, 서승우(박정서), 강성조(김상길), 조봉업(윤지영), 이병진(전필건),  
정영준(김태익), 김광용(이상영), 김광휘(손옥수), 김선조(안종화), 김명선  
(최진섭), 이필영(김상태), 고광완(최창주), 김성엽(김종식), 이중환(김형준)  
김순은, 김태영, 박재영, 변창흠, 배득중, 손희준  
※ (괄호)는 대리참석자

- 출석 직원 17인  
부원장 권오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소장 이삼주,  
연구기획실장 신두섭, 행정국장 유순기, 조직진단분석센터소장 강영주, 지방  
재정연구실장 이효, 지역발전연구실장 박진경, 기획총괄부장 송지영, 재정

투자조사부장 김상기, 재정평가부장 여규동, 연구기획과장 이용애, 행정예산과장 김상우, 서무관리과장 김희우(이사회 진행), 권경철(회의록 작성), 김영목, 기현주, 이지형

#관련 사진

